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재공급공고(Fd-7)

※ 당첨 후 계약체결기간 내 미계약시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므로, **사전에 현장답사 및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주택용지는 2017.12.29.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전매처리 기준이 적용되오니 매수자(신청인)께서는 9번 명의변경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공급대상용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필지 수	면적(m ²)	공급금액(원)	건폐율	기준 용적률	최고 층수	가구수	용도 지역	공급 방법	비고
Fd-7	17	241.0 ~279.0	465,850,000 ~534,285,000	60% 이하	150% 이하	3층	3가구 이하	제1종 일반주거	추첨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① 신청예약금은 필지당 10,000,000원입니다.

② 필지별 세부내역 및 관련 도면은 공고문 첨부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 개인(법인 신청불가)

① 공급공고일('21.09.08.) 현재 만19세 이상 일반실수요자 개인만 신청가능합니다.(법인 신청불가)

② 1인 1필지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전자 추첨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9.27(월) 09:00~15:00	2021.09.27(월) 16:00	2021.09.27(월) 17:00 이후	2021.10.06.(수)~10.08(금) 10:00~17:00 (12:00~13:00 제외)
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s://buy.gh.or.kr)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부

①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 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 ③ 상기일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실제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연습하기를 실시하여 청약신청 관련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혹은 설정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청약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청약하지 마시고 신청예약금 입금시간 등을 감안하여 여유 시간을 갖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 분양신청 절차 범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고문 및 관련사항 등 확인 ⇒ 신청 토지 선택 ⇒ 인터넷 청약 이용약관, 유의사항, 종람확인 등의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가상계좌 부여) ⇒ 신청예약금 지정계좌 입금
--

[일반사항]

- ① 분양신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우편, 현장접수 불가)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의 인터넷청약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자동 차단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신청서, 대표자 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1인이 2개 이상의 필지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⑥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가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은 공동신청인 모두가 유효한 범용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⑦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추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신청인은 각각 해당 필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에서 필지선택시 필지번호는 예정지번(예 701-4 등)으로만 표시됩니다. 분양희망 필지의 예정지번(면적 및 공급가격)이 선택하려는 필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⑧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 ⑨ 분양신청자와 계약시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⑩ 분양신청시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부여된 가상계좌에 신청 예약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예약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마감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⑪ 자세한 신청절차, 공동인증서 발급, 대표자 선임계 작성, 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분양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첨 및 공급대상자 결정]

- ① 추첨은 공사의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② 전산추첨 시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③ 추첨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사전에 공사에 연락(031-220-3106)하신 후 내방(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으며,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 ④ 추첨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신청 접수 당일 17:00 이후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반환 및 귀속

납부계좌	토지분양시스템에 신청서 제출완료시 가상계좌 자동부여
------	------------------------------

[납부]

- ①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되는 지정계좌에 신청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 ② 계좌번호는 신청건별로 유일하게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반드시 부여받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이외의 타 계좌 입금시 무효처리 합니다.
- ③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시간이 경과된 후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기준금액 이하 입금시 해당 신청은 무효이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④ 신청예약금 납부는 신청시 지정되는 농협계좌로 한정되므로 농협 이외의 은행에서 지준이체로 인한 지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반환]

-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미체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②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공동신청 시에는 대표자명의] 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속]

-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② 신청자격 부적격·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계약체결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부

[계약체결일자] 2021.10.06.(수)~10.08(금) 10:00~17:00(12:00~13:00 제외)

[구비서류]

- 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분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③ **계약체결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전액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분)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대리인 계약체결 불가)
 - 계약금 납부 영수증(토지대금의 10%에서 신청예약금을 차감한 금액)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계약금 납입계좌번호는 신청접수 당일 17:00 이후 게시되는 추첨결과 및 계약체결안내문에서 필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금 납입계좌는 신청예약금 납입계좌와 다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대금납부조건 및 각종 이자율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금납부조건] : 유이자 2년 분할납부[할부이자 현행 연2.3%]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잔 금
계약시 10%	6개월 후 22.5%	1년 후 22.5%	1년 6개월 후 22.5%	2년 후 22.5%

- ① 계약금을 제외한 매회 할부금(잔금 포함)의 금액단위는 십만원 이상으로 하며,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1회차 중도금에 산입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 대금납부 등에 대한 별도의 고지는 생략하오니, 용지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춰 약정대금을 계약서에 명기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③ **납부일정 등 대금납부 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할부이자]

- ① 계약체결일부터 미납잔여 대금에 대해 할부이자(현행 연2.3%)가 부리됩니다.

[지연손해금]

- ① 매매대금(할부원금, 할부이자 포함)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현행 연 6.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소유권이전,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은 토지대금(할부원금, 할부이자 및 정산금 포함)을 전액 납부 후에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적정리 완료되어 토지사용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9. 명의변경

- ①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② 명의변경시 양수인은 이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또한,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③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 및 명의변경(전매계약) 거래는 실거래신고 대상이며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④ 명의변경 관련 정부정책,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개정시 변경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⑤ 토지대금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⑥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내용 일부 발췌

□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생업·취학·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 상기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① 취득세는 잔금납부일(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대금 완납 또는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최종약정일(최종 잔금납부

약정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④ 매매 대금이 완납 또는 소유권이전 된 때에는 재산세는 매수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사용승낙 또는 최종 약정일 경과 시에는 매도자인 우리 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를 매수자로부터 공사가 수납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계약시 연대 이행)
- 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 부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⑥ 주요 세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관계법령을 확인하고, 과세기관에 문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 ① 공급신청자는 공급신청 전에 대상 토지를 방문하시어 토지, 주변현황 점검 및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조건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이때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하며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②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유지관리공사, 서정리역세권 공공시설 조성공사 등이 진행 중이고 주변에 택지개발사업 2단계, 3단계 조성이 진행 중으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 및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제약사항,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 ④ 토지사용시기에도 해당블록 주변은 단지조성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블록 진 출입 등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⑤ 진출입 관련 도로점용허가 등은 매입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⑥ 해당 블록의 지반상태는 토사, 풍화암, 암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별로 지반상태가 상이함을 알려드리니 매입자는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⑦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설치하는 현재 진행 중으로 인허가 변경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완료 이후 토지분양자의 요청에 의한 이동설치는 불가함으로, 매입자는 분양계약前 주변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및 현황을 확인하여야 함.
- ⑧ 가스, 전기, 통신 등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시설물 설치계획은 해당 사업시행자에 매입자가 직접 문의하여야 함.
- ⑨ 건축행위 중 주변도로내 무단주차, 컨테이너 임의거치 및 분양홍보 사무실(간이 파라솔 포함)의

도로 및 보도내 무단 점유시 기반시설 유지관리권자(공사 및 시공사) 측에서 강제철거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⑩ 부지건축 중 매립폐기물 발생 시에는 필히 현장보존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 훼손 시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경기주택도시공사 폐기물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약 5개월 소요)

<매립폐기물 처리절차>

- ① 폐기물 확인 → ② 폐기물 발생통보(확인자→경기주택도시공사) → ③ 폐기물 처리주체 확인
→ ④ 폐기물 처리요청(경기주택도시공사→처리주체) → ⑤ 폐기물 처리
※ 처리주체(前 소유자) 처리지연 및 거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처리 후 구상권 청구

[블록 유의사항]

- ① 해당용지는 원지반 상부 성토용지로서, 분양자가 토지사용을 위하여 원지반 하부의 지반조사 및 지반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분양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수행하여야함.
※ 위의 성토용지는 지하부의 암반층, 매립폐기물 유무 등이 미확인된 원지반(사업시행前 원래 토지) 위로 조성계획된 토지의 높이까지 흙쌓기용 재료(최대치수 30cm 미만의 토석)로 다지지 않고 쌓아올린 용지를 말함.
-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완충녹지3 철도변 방음벽(H=9.0)의 신설계획이 되어 있으나, 설치위치가 철도기관에서 설계진행 중인 수원발KTX 노선(안)과 중첩됨에 따라 노선확정(시기 미정) 결과에 의하여 설치 주체 및 규모 변경이 가능함.
- ③ 기반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유지관리공사 진행으로 인허가 변경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토지분양자의 요청에 의한 보안등 등 기반시설 이동설치는 불가함.
- ④ 민간 기반시설(가스, 전기, 통신 등) 공급계획은 직접 문의하여야 함.
- ⑤ 완충녹지3 인접하여 서정리역~지제역간 철로확장 등 수원발KTX 확장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계획은 철도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함.

문 의 처

분양 관련	계약체결/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택지사업부		031-220-3106
개발 관련	지구단위계획 건축사항/현장확인	고덕사업부	Fd-7	070-8852-7522

- 공급면적, 공급금액 등 세부내역은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 분양공고 개별확인 하신 후 도서열람과 현장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열람 : 공사 홈페이지(<http://www.gh.or.kr/>) → 사업정보 → 택지개발 → 고덕국제신도시

2021. 09. 08.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